

#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민간위탁(재계약) 동의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과정

- 제출일자: 2023. 3. 9.
- 제출자: 서구청장
- 회부일자: 2023. 3. 9.(의안번호 제428호)
- 상정일자: 제24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사회도시위원회(2023. 3. 16. 상정 · 의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: 박미설 사회복지과장)

### 가. 제안이유

- 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3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,
- 현 수탁단체인 (사)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의 사업수행 실적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민간위탁(재계약)으로 추진하고자 「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명: 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 운영
- 민간위탁(재계약) 추진근거
 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  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  - 「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운영 및 위탁)

- 「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의3 (의회동의 및 보고) 및 제14조의 3(재계약)

○ 민간위탁(재계약) 필요성

- 장애인재활교육센터 사업의 전문성 및 업무의 연속성 확보
  -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구성·운영으로 장애인의 사회복귀 유도
  -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를 통한 후원사업 활성화로 지역사회의 돌봄을 느낄 수 있는 연대의식 함양
-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평균 82점(기준 70점이상 획득)
  - ※ 평가일시: 2023. 3. 6.(월), 평가위원: 3명(내부위원)
- 2023년 제1차 서구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
  - ※ 심의일시: 2023. 3. 7. ~ 3. 8.(2일간), 심의결과: “적정”

○ 시설개요

- 시설명: 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
- 위탁단체: (사)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(지회장 김종철)
- 위탁기간: 2023. 7. 1. ~ 2028. 6. 30.(5년)
- 주요사업
  -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(건강댄스, 노래·요가·역도·탁구교실, 뉴스포츠 등)
  - 직장생활체험을 할 수 있는 작업장 운영
  -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상담 실시
  - 지역 내 후원 개발 및 연계로 생계곤란 장애인에 대한 지원 실시
- 시설현황

시설명	소재지	규모	종사자	주요시설
서구 장애인 재활교육센터	서구 달서로5길 10 (내당2.3동)	대지:655㎡ 건물:597㎡ (지상2층)	2명	1층: 프로그램실, 작업장, 식당 2층: 재활운동실, 재활치료실, 사무실

○ 민간위탁(재계약)

- 위탁사무: 장애인재활교육센터 시설 및 사업 운영 전반
- 위탁기간: 2023. 7. 1. ~ 2028. 6. 30.(5년)

※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

- 방법: 성과평가 및 서구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통한 심의(적정여부판단) 후 재계약 여부 결정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진호)

- 본 동의안은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의 위탁운영기간(2018. 7. 1. ~ 2023. 6. 30.) 만료에 즈음하여 「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, 「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최초 동의로부터 6년이 경과한 민간위탁(재계약)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서,
- 현 수탁자인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서구지회는 2004년 7월 센터 개관 이후 연속하여 해당 사무를 위탁받아 장기간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의 노하우를 축적해 오면서,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재활프로그램 및 작업장 운영을 비롯해 장애인 재활 의지 제고 및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수행해 왔고, 2023년 3월 실시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평점 82점으로 양호한 점수를 받았으며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에서도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음.
-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현 수탁자인 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에 재위탁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심사결과: 원안가결